

2018년 연수구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문

■ 급식지원 신청방법

2018년 겨울방학 중 결식이 우려되어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**2018년 11월 30일(금)까지**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신청방법: 방문신청(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)

※ 2018년 여름방학 급식지원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없음.

■ 급식지원 방법

○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, 동봉된 “아동급식 신청(추천)서”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**√표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희망급식지원방법

급식지원방법	[] 일반음식점(급식카드)	[] 도시락
	[] 지역아동센터	[] 학교급식소

※ 시 아동청소년과-8077(2016.06.13.) 「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개선계획」에 따라 **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(1~6학년)**은 급식지원 시 **도시락 배달**로 지원 권고

■ 신청시 필요서류

○ 신청아동의 결식우려 및 소득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(예 :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납입증명서, 의사진단서, 보호자의 재직증명서 등)

■ 각 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

행정복지센터	연락처	읍면동	연락처	행정복지센터	연락처
옥련1동	032-749-6043	연수3동	032-749-6264	송도1동	032-749-6531
옥련2동	032-749-6073	청학동	032-749-6334	송도2동	032-749-6584
선학동	032-749-6126	동춘1동	032-749-6379	송도3동	032-749-6783
연수1동	032-749-6182	동춘2동	032-749-6422		
연수2동	032-749-6233	동춘3동	032-749-6462		

※ 연수구청 가정정책과 아동청소년팀 결식아동급식담당 ☎032-749-7766

■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기준

(1)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
: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 (결식우려의 정의) 보호자의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,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

- 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
- 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
- ③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- ④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
- ⑤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·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
- ⑥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-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동반장, 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
※ 다만,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

(2)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

: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에 신청

- ※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※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
- ※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【지원대상별 제출 증빙서류】

지원대상	증빙자료	공통사항
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구의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③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	- 지자체 확인 (지자체 지원 가구만 해당)	- 결식우려 사유 증빙서류 제출 (맞벌이, 보호자 질병·부재 등)
④ 보호자의 가출,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및 학대·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	-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 - 부모의 질병·장애여부를 증빙 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	
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	-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2개월분	
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·통반장, 시·군·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	- 담임교사 등 추천서	

아동급식 신청(추천)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※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

(앞 쪽)

신청(추천)자	성명	아동관의 관계	생년월일
	주소		전화번호(휴대폰)

보호자 ※ 신청(추천)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	성명	관계	동거여부
	직업(구체적으로)	월수입(평균)	전화번호(휴대폰)
	주소		

대상아동 1	성명	성별 [] 남 [] 여	취학여부 [] 취학 [] 미취학
	학교명 [] 초 [] 중 [] 고등학교 학년 반		
	주소		주민등록번호 (세)

대상아동 2	성명	성별 [] 남 [] 여	취학여부 [] 취학 [] 미취학
	학교명 [] 초 [] 중 [] 고등학교 학년 반		
	주소		주민등록번호 (세)

신청 (추천) 의견	신청(추천)사유	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가구의 아동 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☐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☐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☐ 보호자 양육능력미약(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, 유기, 방임, 학대 등) 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%이하 가구 아동 ☐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·통반장,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(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) (추천사유 : _____) ☐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
	급식지원 필요 유형 (결식여부)	※ 중복 선택 가능 ☐ 연 중 : ☐ 조식 ☐ 중식 ☐ 석식 ☐ 학기 중 평_____일 : ☐ 조식 ☐ 석식 _____토·공휴일 : ☐ 조식 ☐ 중식 ☐ 석식 ☐ 방학 중 : ☐ 조식 ☐ 중식 ☐ 석식
	희망 급식 방법	☐ 일반음식점 ☐ 도시락 배달 ☐ 지역아동센터 ☐ 학교급식소 ☐ 기타 (_____)

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으로 신청(추천)합니다.

20 ㄴ ㅁ ㅂ

신청(추천)자 :

서명 또는 인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
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	--	--------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(보호자)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